

# 심 사 보 고 서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46
----------	-----

2021. 10. 22.(금)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0월 13일

-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가. 제안사유

-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출연목적

-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17. 2. 17)된 기관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및 교육, 여성·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출연 예정금액: **1,578,814천원** (도비100%)

### ○ 출연내역 : 충북여성재단 운영비, 사업비

### ○ 출연계획 (단년 · 반복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21년 (B)	2022년 (C)	증감 (D=C-B)
도비(100%)	1,317,177	<b>1,578,814</b>	<b>261,637</b>

##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 가. 법적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
-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충북여성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출연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제출되었음.

## 나. 종합 의견

-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7년 2월에 설립된 재단으로,
-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교육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성평등 교육·연구의 거점 기관으로서 존립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은 타당함.
- 출연금은 전년과 대비하여 26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도 파견 공무원의 복귀에 따른 대체인력(2명) 및 신규인력(2명)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것임.
- 신규인력의 경우 재단의 부족한 인력(타시·도 60% 수준) 해소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과중 및 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고 조직진단 등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참고 1

## 충북여성재단 예산현황

### □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19년 (A)	2020년 (B)	2021년 (C)	2022년 (D)	증감 (E=D-C)
도비(100%)	1,205	1,205	1,317	1,579	262

### □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

#### ○ 인건비 (증 226백만원)

- 급여인상(34) / 공무원 대체인력 2(95)\* / 신규인력 2(85) / 연구수당(12)

\* 현재까지 2명 복귀, 2022년 2명 복귀로 공무원 파견 종료(민선7기 도지사 공약)

#### ○ 경비 (증 27백만원) \*인력 4명 증원에 따른 제비용 증가 / 기타(9)

### □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사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합 계	1,682	※ 출연금 1,579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등 103백만원	
운영재원	1,675		
인건비	956	- 재단직원 16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본급 및 수당, 퇴직급여 등)	
경 비	259	-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 집기구입 등	
사업비	460	- 교육운영, 정책연구,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예비비	7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재산 및 운영경비)**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 등의 출연금
3. 제9조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
2.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여성인권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
6.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8.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846
----------	-----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1일  
제안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
- 출연목적 및 필요성
  -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17. 2. 17)된 기관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및 교육, 여성·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출연 예정금액 : 1,578,814천원(도비100%)
- 출연 내역 : 충북여성재단 운영비, 사업비
- 기대효과
  - 도민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
  - 여성·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

## 3. 의안전문 : 불 임

## 4.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 5. 기타



# 1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여성정책팀	이남희	우영미	최영민	220-3912

기관명	충북여성재단				
출자·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사 장 : 이시중</li> <li>○ 일반현황 : (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현원/정원) 13/14 (주요사업)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가족 역량강화 교육 여성·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성주류화 과제 컨설팅</li> </ul>				
출자·출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1,578,814천원(도비 1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액	2022년 예산액*	재원별	
			계	도비출연금	순세계잉여금
계	1,423,342	1,681,379	1,681,379	1,578,814	102,565
※ 수탁기관 수익금 제외 :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출자·출연 필요성	○ 지역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li> <li>※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li> </ul>				
지도감독 부서인권 (중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여성재단은 대내외 여성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li> <li>○ 성평등 충북도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연구를 비롯, 충북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li> <li>○ 특히, 2022년도에는 도 파견공무원(2명) 최종 복귀에 따른 전문인력 대체채용(2명)과 함께 도내 여성인재 DB구축, 재단사업 홍보,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사군 교육 네트워크 사업, 여성정책 아카데미, 여성마을기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신규인력(2명) 증원 등, 충북여성재단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시기로, 이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li> </ul>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li> <li>2.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인원 및 조직현황 등)</li> <li>3. 출연사업계획서</li> </ol>				

#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 (경영평가)

- 경영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치 등 명확히 설정, 설정과정에 전 구성원 참여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및 비대면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등

###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은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의 연구·개발과 충북여성의 능력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17년 설립, '18년~'20년은 출범 이후 재단 조직 안정화 및 정착 시기였으며, '21년 이후 본격적인 파견공무원 복귀와 함께 충북여성재단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여성의 권익증진, 교육·연구,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특히, 재단운영 기본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도 여성정책 발전을 이끌어 나갈 기반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이 절실하므로 원안의결을 건의드립니다.

## 3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내역	2021년 예산액(최종) (C)	2022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충북여성재단 운영	1,317,177	1,578,814	1,578,814	-	261,637

## 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여	여	부	여	여	여	여

# 1-2 출자·출연 기관현황

## 충북여성재단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전화번호 : 043-285-2421			
주요연혁	- '17. 2. 17 : 충북여성재단 설립		기관형태	출연기관(재단법인)			
인원현황	계	정규직		2개 센터			
	33	14		19			
임원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기간			
	이사장	이○○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박○○	충북 여성재단 대표이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신○○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재임기간			
	선임직이사	고○○	전 충청북도 여성기획팀장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금○○	옥천자원봉사 센터장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김○○	설성어린이집 원장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김○○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박○○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박○○	충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심○○	충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연○○	충북기업진흥원 원장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유○○	동양일보 상임이사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이○○	충북여성정책포럼 대표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정○○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장	2021. 02. 17 - 2023. 02. 16			
	당연직감사	이○○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재임기간			
	선임직감사	이○○	태성회계법인 대표	2021. 02. 17 - 2023. 02. 16			
조직	<pre> graph TD     A[이사장(도지사)] --&gt; B[대표이사(상근)]     B --&gt; C[이사(13명)]     B --&gt; D[감사(2명)]     B --&gt; E[사무처장]     E --&gt; F[경영지원팀(3명)]     E --&gt; G[교육사업팀(4명)]     E --&gt; H[정책연구팀(5명)]     G --&gt; I[여성긴급전화 1366]     H --&gt; J[성별영향평가센터]     </pre>						
주요기능	- 여성정책연구·개발,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 지역 여성리더십 향상 및 역량강화,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10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31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A=B+C)	100
	예산액	1,288	1,393	1,423		부채(B)	-
	지출액	1,205	1,205	1,317		자본(C)	1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149			2,202		△53	

## 1-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충북여성재단 출연	구분	출자	1,578,814천원(도비)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출연	

###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민관 소통 역할 수행
- 지역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의 중심 기능 수행

### □ 출연개요

- 사업명 : 충북여성재단 운영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 1,682백만원(출연금 1,57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03백만원)
- 주요내용 : 충북여성재단 교육 및 연구사업, 성평등·일자리 사업
- 출연근거 :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 □ 산출기초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1,682		
운영재원	1,675		
인건비	956	- 재단 직원(16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본급 및 수당, 퇴직급여 등)	
경비	259	- 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 집기구입 등	
사업비	460	- 교육운영, 정책연구,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예비비	7		

※ 수탁기관(성별영향평가센터·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사업비 별도

### □ 기대효과

- 지역 여성들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
- 여성·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

###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충북여성재단은 전액 도비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도비 출연금은 재단 존립과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금액임.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